

제80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의안번호	제2016-통신80-235호	의 결 사 항
의결일자	2016. 11. 8.	
공개여부	공 개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

제출자	위원장
제출일자	2016. 11. 8.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

<2016. 11. 8.(화), 의결사항, 불법정보팀>

1. 제안사유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불법정보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함.

2. 의결주문

- 심의번호 불법-16-80-0001~3701(3,701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름.

3. 안건개요

- 심의대상 3,701건은 ‘사행행위’, ‘금융투자 관련’, ‘불법 할인 자금 유통’, ‘사생활 조사 행위’, ‘개인정보 관련’ 정보임.

구분	사행행위	금융투자 관련	불법 할인 자금 유통	사생활 조사 행위	개인정보 관련	해당 없음	계
건수	2,982	14	52	28	616	9	3,701

4. 주제별 안건

위반주제	개인정보 관련
심의번호	불법-16-80-3077~3692 (616건)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내용의 정보 ▲ 타인명의 통장을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신고인	금융감독원 2건, 일반인 438건, 모니터 176건

가. 문제내용

- 심의번호 불법-16-80-3077~3254(178건)은 사이트 게시글을 통해 대출디비(DB), 신용카드 트랙, 불법적으로 획득한 아이폰 및 각종 사이트 아이디(ID)를 판매하며 전화번호, 메일주소, SNS 아이디 등 판매자 연락처를 게시하고 있음.
- 심의번호 불법-16-80-3255~3692(438건)은 개인·법인통장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를 한다는 내용으로, 거래방법을 소개하며 전화번호, SNS 아이디 등의 연락처를 게시하고 있음.
 - 동 정보는 【붙임】과 같이 국내 및 해외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심의번호별 정보내용]

심의번호	정보내용
불법-16-80-3077~3254 (178건)	개인정보 판매
불법-16-80-3255~3692 (438건)	타인 명의거래(대포통장·대포차·대포폰)

- 동 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 외의 다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며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9호 등을 적용·제시하였음.

나. 적용조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제4호

※ 참고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50조(벌칙),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및 제49조(벌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2조제4항 각 호의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3조를 위반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제7호의 인증서다.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행위를 한 자

다. 확인사항 및 검토의견

정보내용	발생장소	의결주문	심의번호
개인정보 판매	국내서버	삭제	불법-16-80-3077~3227 (151건)
	해외서버	접속차단	불법-16-80-3228~3254 (27건)
타인 명의거래	국내서버	삭제	불법-16-80-3255~3668 (414건)
	해외서버	접속차단	불법-16-80-3669~3692 (24건)

붙 임 : 심의대상 목록 1부. 끝.